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1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혜

변론 종결2020. 7. 10.

판결 선고2020.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194,179원, 원고(선정자) C에게 15,511,791원, 원고(선정자) D에게 18,097,0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0,798,509원, 원고 C에게 47,089,366원, 원고 D에게 55,399,2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인정

가. E는 전주시 F 임야 1정 7무보 중 지분(위 임야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전주시 G 임야 2,182㎡와 전주시 H 전 1,312㎡가 되었는데, 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62. 6.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E의 상속인으로는 처 I과 자녀인 피고, J, K, L, M,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를 '원고'라 한다]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1983. 6. 2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62.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N 임야 2,114㎡(이하 'N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31. N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전부1)를 O에게 대금 7억 원에 매도하고, 2015. 7. 30. 위 토지들에 관하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5, 16, 18호증, 을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는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조치법은 통상의 등기절차와는 다른 간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를 허용하되,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21. 선고 99다3925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1962. 6. 15.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스스로도 아버지인 E로부터 사망 당일인 1962. 6.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당시 E가 전주시 P시장 옆에서 피고와 함께 양산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가 1962. 6. 10. 단행된 정부의 화폐개혁 조치를 잘 활용하여 양산의 판매량을 대폭 늘려 큰 수익을 얻게 되자 E가 기뻐하면서 양산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해주겠다고 하면서 1962. 6. 15. 오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분배하여 줄 수익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② E는 1928. 11. 8.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피고, J, K, L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Q와 사이에 원고들 및 M을 두었는데, 원고들과 M 역시 E와 I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및 호적등재되었다. 피고는 R생으로서 1958. 5. 14. 육군에 입영하여 1960. 6. 30. 전역하였고 E가 사망할 당시 25세였으며, 원고 A은 S생으로서 17세였다. 한편 I은 1968. 11. 18. 사망하였고, M은 1969. 2. 3. 사망하였다.

③ E는 사망하기 전까지 전주시 T에서 Q, 원고들 및 M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는 모친인 I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④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1980년대에 알게 되었으나 '언젠가 피고가 처분하면 지분에 따라 나눠줄 것으로 생각하였고 형제간의 우애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들춰내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O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9. 2. 25. 오후 '소송건 잘 받았네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해보세 소송에 나는 임하지 않겠네 승소해서 내 재산 압류경매하게', '매매대금 700,000,000원 중 양도소득세 244,000,000원을 납부했고 456,000,000원을 7명 배당 1인당 65,142,857원일세', '거짓말로 생각해도 좋아 우리 부부는 금년 중에 우리 동네 수용되면 동생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생각하고 있었네 나와 형수의 참뜻이라네 여하튼 미안하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이어서 'G(1070평은 아버지 땅 N은) 내가 산 땅일세, 아버지 땅만 계산하면 칠억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서류 변경하시거나 경찰 그만두고 과수원을 해서 생활을 할까 했는데

배나무를 심어 병치레만 하고 수확은 U가 했을 뿐일세'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9. 2. 26. 다시 '형이 모든 것을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옛날처럼 지내자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수용되면 동생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으니 안심해도 돼 거둬 용서를 빌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만약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가 2019. 2. 당시까지 생존한 공동상속인(원고들, 피고, J, K, L) 7명이 분배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가 매매대금 합계 7억 원에 처분한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만이 '아버지 땅'으로 상속재산이고 그 외에 N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니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송서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수차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시효취득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가 사망한 1962. 6. 15.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O에게 매도한 2015. 7.경까지 5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 및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일정 기간(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등 참조),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가 사망한 1962. 6. 15.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점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속지분의 계산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익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N 토지를 합계 7억 원에 O에게 매도하였는바, 감정인 V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7억 원의 매매대금 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은 445,963,999원2) [= 700,000,000원 × (316,390,000원 + 221,728,000원)3 ÷ 844,648,000원4],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그중 E가 소유하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148,654,666원(= 445,963,999원 ÷ 3)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지분의 계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 I 및 M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의 내역은 다음 계산표와 같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다음 계산내역과 같다.

① 원고 A: 36,194,179원(= 148,654,666원 × 532/2185)

② 원고 C: 15,511,791원(= 148,654,666원 × 228/2185)

③ 원고 D: 18,097,089원(= 148,654,666원 × 266/2185)

1	I(처)	2/23		
2	B(장남)	6/23	122/437[6/23 + (2/236) 망 I의 상속분으로, 이하 같다.*4/19)]	722/2185[122/437 + (84/4377) 망 M의 상속분으로, 이하 같다.*4/15)]

1	I(처)	2/23		
3	A(차남)	4/23	$84/437[4/23 + (2/23 \times 4/19)]$	$532/2185[84/437 + (84/437 \times 4/15)]$
4	M(3남)	4/23	$84/437[4/23 + (2/23 \times 4/19)]$	
5	J(장녀)	1/23	$21/437[1/23 + (2/23 \times 1/19)]$	$133/2185[21/437 + (84/437 \times 1/15)]$
6	K(차녀)	1/23	23/437[1/23 + (2/23*2/198)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는 1967. 8. 19.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K의 상속분은 구 민법 제787조 제1항(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속한다) 및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남자의 상속분의 1/2이 된다(동일가적내 여자의 상속분). 제3 상속개시 당시에도 이와 같다.)]	$171/2185[23/437 + (84/437 \times 2/15)]$
7	L(3녀)	1/23	$21/437[1/23 + (2/23 \times 1/19)]$	$133/2185[21/437 + (84/437 \times 1/15)]$
8	C(4녀)	2/23	$40/437[2/23 + (2/23 \times 1/19)]$	$228/2185[40/437 + (84/437 \times 1/15)]$
9	D(5녀)	2/23	$42/437[2/23 + (2/23 \times 2/19)]$	$266/2185[42/437 + (84/437 \times 2/15)]$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O에게 매도한 후 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상당액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9) 원고 A에게 36,194,179원, 원고 C에게 15,511,791원, 원고 D에게 18,097,0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날인 2015. 7. 30.(민법 제536조,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통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된 일자부터 기산한다)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8.(이 때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선지

판사김옥곤

판사장진훈

별지

-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의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03. 8.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범위 내의 금액이다.
- 3)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에 해당한다.
- 4) 이 사건 토지들 및 N 토지의 시가 합계액에 해당한다.
- 5) 제1, 2, 3 상속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모두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에 의한다.
- 6) 망 I의 상속분으로, 이하 같다.
- 7) 망 M의 상속분으로, 이하 같다.
- 8)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는 1967. 8. 19.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K의 상속분은 구 민법 제787조 제1항(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속한다) 및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남자의 상속분의 1/2이 된다(동일가적내 여자의 상속분). 제3 상속개시 당시에도 이와 같다.
- 9)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시가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